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98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집행부 발의】

검토보고서



2023. 7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3. 7. .
경제도시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토지정보과장)
- 제출일자: 2023. 7. 7.
- 회부일자: 2023. 7. 7.
- 검토기간: 2023. 7. 7. ~ 7. 11.(5일간)

2. 제안이유

- 지명의 정의 신설 등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2022. 6. 10.) 및 도시철도역 명칭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법령에서 규정한 지명의 정의와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(도시철도역 명칭 비대상)을 반영하여 달서구 지명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 조정 제3호 삭제(안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개정조례안: 붙임
- 관계법령
 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91조, 제91조의2
 - 「자연 · 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
- 입법예고(2023. 5. 11. ~ 2023. 5. 31.)결과: 의견없음
- 행정규제 심사결과: 해당없음
- 부폐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- 조례 · 규칙 심의결과: 원안 가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및 국가 및 대구시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임.
-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22. 6. 10. 개정되어 제2조에서 “지명”의 용어 정의가 규정되었고, 국가 및 대구시 지명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역의 명칭은 지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안 제2조 제3호 규정을 삭제하였음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국가 및 대구시 지명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이견이 없으며, 관련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>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명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<u>도로, 교량, 터널, 고가도로, 지하차도, 교차로, 공원, 광장 등 시설물 명칭과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, 변경, 폐지 또는 조정</u> 4. (생략) 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4. (현행과 같음)

【관 계 법령】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간정보”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.

1의2. ~ 9. (생략)

9의2. “지명(地名)”이란 산, 하천,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(地形)이나 교량, 터널, 교차로 등 지물(地物)·지역(地域)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.

10. ~ 34. (생략)

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)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
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1조의2(지명의 결정) ①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고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

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·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· 도지사가 지명을 결정(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· 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시 ·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 ·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 · 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자연 · 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제5조(지명 분류 체계)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는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.

① 자연지명은 산, 산맥, 골짜기, 고개, 평야, 곶, 하천, 호수, 섬으로 구분한다 다만, 해양지명은 제외한다.

② 인공지명은 도로(지하차도, 고가도로, 육교, 교차로, 나들목(IC), 교량, 터널), 수부(인공호수, 저수지, 나루터, 보), 주거(마을, 신도) 공원으로 구분 한다.